



글로벌 뉴스픽



GLOBAL
NEWS
PICK



차별금지법

1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

2018년 12월 6일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 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종류로써 마목에 ‘직장 내 괴롭힘(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인 모욕, 위협 또는 부당한 언동을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를 신설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던 차별금지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

안에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괴롭힘’에 대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도 ‘괴롭힘(harassment)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동법 제26조 제4항은 ‘괴롭힘(harassment)’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주관적 인식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괴롭힘으로 인식을 한 경우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상의 괴롭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고용재판소의 *Wastenev v.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결정¹이 있다. 이 사건에서 고용재판소는 기독교인이 직장에서 타종교인(무슬림)에게 전도를 한 행위는 직장 내에서의 ‘종교적 괴롭힘(harassment)’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따라서 회사가 기독교인을 징계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회사가 기독교인을 징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국 평등법상의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직장에서 동료들간에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금지가 되었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¹ UKEAT/0157/15/LA, 영국 고용재판소 “직장에서 전도를 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 차별금지법 해외 판례, CREDO 매거진 ISSUE 2 110페이지 참조.

상기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추가된다면, 인권위도 이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것이 예상된다. 현재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도과되어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과정 중에 있다.

2 한국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 출범 인권위, “평등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필요”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1월 9일 혐오·차별 대응기획단(단장 강문민서)을 꾸린데 이어 2월 20일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최영애 위원장은 2018년 9월 취임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성 소수자, 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는 종교 및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등 인사 총 25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소속 조혜인 변호사를 비롯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총체적으로 담긴 평등에 대한 기본법이 없다”며 “우리 사회의 혐오

와 차별의 뿌리를 뽑으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2002년 참여정부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어 2007년 법무부는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 등 7개 차별 사유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2012년 18대 대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행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성전환’과 같이 차별금지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평등정책

1 한국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성커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가족의 정의를 변경”

2018년 12월 7일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가족의 정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결혼과 출산으로 생긴 부부, 부자, 모녀 관계와 입양에 의해서만 가족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3조에서 이러한 가족의 정의를 변경하여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변경된 가족의 정의에 근거하여, 법률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서로 부부라 생각하며 동거하고 있는 동성 커플에 대해 법원이 해석을 통해 사실혼으로 수용을 해 주는 판결을 내리면,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행법이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커플이 이 법

에 따라 ‘가족’임을 인정받게 되는 법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우회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합의하에 동거하는 동거 문화가 사회적 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 결혼 기피 현상이 더욱 확산되어 건강한 혼인·가족제도가 파괴될 것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외국 사례와 같이 동성혼을 한 커플이 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입양까지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우자 및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가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혼도 정상이고, 동성커플이 부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법안에서는 가족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윤리적 논란도 발생할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많은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 개정안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고,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 미국

미 연방법원 “플로리다주 탬파시, 회복(전환) 치료 계속하라” “미성년자 피해 입었다는 증거 전혀 제출되지 않아”

지난 2월 6일, 탬파 베이 타임즈는 미국 연방법원이 플로리다 주 탬파시에 ‘회복(전환) 치료법’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7년 12월, 기독교 법률가 단체가 회복(전환) 치료법을 금지한 탬파시의 조례(2017년 4월 채택)에 대해 제기한 이의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탬파시의 위 (금지) 조례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회복(전환) 치료법을 제공하는 치료사와 상담사들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회복(전환) 치료법이란 주로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성별 정체성을 회복하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탬파 베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이러한 회복(전환) 치료법이 미 정신 의학계에서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조롱당해 왔는데, 미국소아과학원, 미국정신학회, 미국심리학회, 미국심리분석협회, 미국 의과대학과 같은 전문 단체들로부터 “비효율적이고 결함이 있으며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내린 연방법원 판사는 “회복(전환) 치료법상 구두 상담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

다”며 “(회복(전환) 치료에 따른) 대화 요법을 금지하는 것은 (재판에서) 피고들의 발언권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원고(기독교 법률가 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본 것이다. 또한 “회복(전환) 치료법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LGBTQ 미성년자 자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단체인 트레버 프로젝트에 따르면, 탬파시를 포함한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미국 내 다른 어떤 주보다 더 많은 회복(전환)치료 금지법을 채택한 상황이다. 이번 탬파시에 대한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회복(전환)치료법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명윤리-낙태

1 미국

뉴욕 주 “낙태할 권리 기본권으로 인정”
Roe v. Wade. 판결 기념하여 법안 통과

1월 22일, 뉴욕 주 의회 상하 양원은 Roe v. Wade. 판결을 기념하여 주법상 낙태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출생 전 태아에 대한 보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의결했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며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미 연방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같은 날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재생산건강법(Reproductive Health Act)에서 명했다.

이 법은 “임신을 하는 모든 개인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낙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4주 이상의 태아를 잠재적 살인 피해자로 규정했던 것을 폐지하고, 낙태는 형법에서 완전히 배제하며, 정식 의사 이외의 자격증을 가진 의료인들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욕주는 그동안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

험이 있는 경우에만 임신 24주내 낙태를 허용해 왔다. 24주 이후의 낙태는 살인으로 취급해 중죄로 처벌했다. 뉴욕주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으나 주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상원을 장악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뉴욕주 생명위원회(the New York State Right to Life Committee)는 “낙태 선언, 곧 낙태에 대한 기본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낙태에 대한 모든 제한을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죽음의 문화’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며 단체는 강력히 경고했다.

이 법안의 통과를 놓고 ‘보수적 성향의 미 연방대법원이 향후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고 미리 낙태에 대한 권리를 성문화한 좌파적 행동의 일부’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2 한국

현재,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여부 판단 곧 내리나 /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논란 가열

우리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여성의 자기낙태에 대한 처벌을, 제2항은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자의 낙태행위를 처벌하고 있

다. 2017년 2월 8일, 이 조항에 대해 위헌소원이 제기되어 2018년 5월 공개변론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현재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연은 당시 여러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지난해 10월에야 만들어졌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들어 이 사건에 대한 현재 결정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로 만료되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그 이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어놓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에, 낙태죄 찬반 논의가 다시 재점화된 양상이다. 지난 2월 14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하기도 해 사실상 정부가 낙태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대상 조항인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해 한 차례 합헌 결정(재판관 4대 4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청구인은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별도로 독립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낙태죄 처벌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임부의 생명과 신체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지도 못하며, 일률적 처벌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당시 법무부는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독립적으로 생명권을 향유한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낙태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예외의 범위는 사회 전체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할 문제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따라서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다”는 논리로 맞섰고 현재는 이 당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성명을 내고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규범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며 “과연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국민의 권익이 높아지는 것인가. 생명과 관련된 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1 미국

제2차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 / 다음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인권도 다루어야

지난 2월 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라는 세계적인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7년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징역을 살다가 귀국 직후에 사망한 미국 청년 오토 워비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 자신은 몰랐던 사실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 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에 항의하듯이 미국 의회에서는 3월 5일 워비어씨의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북한에 경제적인 제재를 더하는 ‘오토 워비어 북한 관련 은행 제한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가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반 홀른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2017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상원은행위원회는 전원일치로 통과한 이후로는 법안 심의 절차가 중단되었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게는 되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지

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법안이 입법하려면 하원의회와 상원의회를 모두 통과 한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에는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이번 북미회담 중에는 침묵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추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2 유럽

지난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유엔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의 제 117차 정기회의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총 37개국의 강제실종 관련 사건이 검토되었다. 동유럽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에서 5일간 열린 정기회의 동안에 많은 민간단체와 실종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실종 사건이 비공개로 다루어졌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 OHCHR)의 웹사이트에 2월 19일에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날 실무그룹은 지난 몇 개월 사이 일어난 51개의 긴급 사건들과 758개의 일반 사건들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이 중 북한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사건은 오랫동안 안건으로 올라왔었고 그동안의 보고서들을 보면 매년 생겨나는 강제 실종 사건 관련국들 중 북한은

유엔의 피해자 신변확인 요구에도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3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유럽의회에서도 북미간 정상회담이 있는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북한인권 유린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북한 정권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페렌찌 부위원장 정책자문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얘기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유럽은 매우 실망했고 추후에 이 의제는 반드시 두 정상 간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 실종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조성길 전 이태리 주재 대사대리와 그의 아내가 망명을 하였을 때 미처 같이 탈출하지 못한 17세 딸을 대사대리 부부가 잠적한지 불과 나흘 만에 북한 정권이 강제 복송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가입한 국제자유권규약과 아동권리협약상의 가족권과 아동권 보호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강제 복송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표현의 자유

1 미국

미연방법원, “동성애 반대 동아리도 축출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 있어”

학교 인권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된 학내 동아리 구제 받아

미연방법원이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 학생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은 학내 학생 동아리 그룹을 학교가 축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아이오와 대학의 기독교 성향 단체 ‘Business Leaders in Christ’는 성경에 기반한 결혼관에 따라 동성애 학생의 지도부 역할을 금지했다.

아이오와 대학은 ‘Business Leaders in Christ’가 동성애 학생의 활동을 금지한 것이 밝혀지자 그 그룹의 등록 상태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는데, 단체의 그와 같은 행동은 그 학교의 인권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이 같은 학교의 조치가 불평등했다고 판단했다. 미연방법원은 아이오와 대학교에 대하여, 동성애 성향 학생의 활동을 금지한 한 기독교 학생 동아리의 등록된 지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스테파니 M 로즈 판사는, 아이오와 대학의

그 같은 동아리 등록 취소 조치를 번복하고, 해당 단체인 'Business Leaders in Christ'에게 다시 등록 학생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녀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로 "학교가 인권 정책을 불평등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즈 판사는 이어 "미국 헌법은 피고인들(아이오와 대학교)이 인권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특히 가장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경우, 그것을 위태롭게 할 만한 어떤 정책이라도 불평등하게 적용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못 박았다.

학생 동아리를 대리한 종교의자유기금의 에릭 백스터 수석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기본적 평등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학생 단체 또한 성명을 발표, "우리는 오늘 법원이 우리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 감사한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우리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게 해 주어 감사한다."고 말했다.



종교의 자유

1 미국

미국 교회, "전통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자"
미연합감리교단 총회에서 친동성애 vs 반동성애 투표로 교리 지켜내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에서 미연합감리교단(United Methodist Church, UMC)은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동성 결혼과 성소수자 성직자 수용에 대한 법사위원회 투표가 진행되었다. 미연합감리교단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전통적 플랜 Traditional Plan'을 더욱 포괄적인 '하나되는 교회 플랜 One Church Plan'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반대 438 대 찬성 384표로 전통적 플랜을 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감리교단은 지난 50년간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성직자 안수 불허 입장을 지켜왔고 현재에 와서도 전통적 교리를 지켜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교단 내에서도 찬반이 나누어져 서로 다른 계획들을 앞세웠던 만큼, 이 투표결과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미국 장로교단은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제 223회 총회에서 '트랜스젠더, 양성미 아닌 젠더, 모든 종류의 젠더정체성'을 인정하고 '완전히' 받아들이도

록 결정을 내렸고 이는 큰 논란이 되었다. 장로교단은 이에 앞서 지난 2014년에 법이 허락하는 동성 결혼식 진행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각각 성직자들의 결정에 맡기는 정책을 총회에서 택했고, 그보다 더 앞선 2010년 총회에서는 성소수자(LGBTQ) 성직자의 안수를 각 노회와 성도들의 결정에 맡긴다는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장로교단은 서서히 급진적 사상들이 교리에 영향을 끼쳐왔고 결국 못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는 결과도 초래했다.

위 두 기독교 교단들의 상이한 결정은 동성애, 동성혼,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정치적 사상에 의해 교회나 성도가 공격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로교단의 사태는 교회들이 종교의 전통적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분열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한 이유로 각 주 의회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종교자유회복법을 꾸준히 제안해왔다. 지난 3월 4일, 조지아주 상원의회에서는 이미 계획되어 있던 공청회를 지연시킴으로 주 차원의 종교자유회복법이 무기한 연기되는 일이 있었다. 이 법안은 법으로 제정되려면 3월 7일까지 상원이든 하원이든 최소 한 곳의 입법 절차를 통과했어야 했는데, 그 기한을 맞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추후의 행보가 모호해졌다.

2 미국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 거부 기독교인 제빵사에 대한 소송 취하

미국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의 종교적 적대감 표현 증거 발견 때문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매스터피스 케이크숍’을 운영하는 잭 필립스씨는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the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로부터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았다가 작년 6월에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그는 2017년 6월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오렘 스카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생일 겸 성전환 7주년을 기념해 트랜스젠더 문화의 상징색인 걸은 핑크색, 속은 파란색인 케이크의 제작 주문을 한 것을 거부하면서 다시 소송을 당했다. 트랜스젠더인 오렘 스카니다 변호사는 잭 필립스씨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지난 3월 5일에 콜로라도주 인권위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적대감 표현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필립스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필립스씨의 소송 대리인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인권위원이 그의 트위터에 필립스씨를 혐오주의자(hater)라고 쓴 글이 공개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하나의 비열한 언변술(a despicable piece of rhetoric)’이라고 지칭했던 전 인권위원 디안 라이스의 발언에 대해 두 명의 현직 인권위원이 2018년에 공개 석상에서 그러한 발언을 지지한다는 언급을 한 증거가 새로 발견 되었다고 한다. 문제의 발언은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판결에서 인권위의 종교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콜로라도주 인권위의 소송 취하 결정에 따라, 필립스씨 역시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수호연맹의 크리스틴 왜고너 변호사는 “양쪽 모두가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소식이고 콜로라도 주정부는 6년 반 동안 필립스씨의 신앙에 대해 적대감을 나타냈으나 그것을 멈추게 됐다. 다른 의견에 대한 인내와 존중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다양한 사회에서는 필수적이다. 인내와 존중은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각각 기독교 건학이념에 반하는 집회와 동성애 집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목소리가 높다.